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8. 23 선고 2024가단11175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4. 8. 9.

판 결 선 고 2024. 8. 23.

주 문

- 피고와 유한회사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2023. 1. 9.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대한민국에 제1항 기재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었음을 통지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판사 최아름

별지 목록

공탁번호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년 금제73호

공탁자 : 유한회사

피공탁자 : 주식회사

공탁금액 : 22,000,000원

공탁원인사실 : 가압류보증

[별지]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원고 회사는 주식회사 A 라는 상호로 유류도소매업을 하고 있으며,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청구의 유한회사 D (이하 '청구의 회사'라 함)의 책임재산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년금73호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청구의 회사로부터 2023. 1. 9. 채권양도양수계약에 의해 양수받은 자입니다.

2. 원고 회사가 청구의 (유) D 에 대한 채권보유

원고 회사는 청구의 (유) D 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가단118786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물품대금 362,112,448원 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결정본 첨부)

3. 사해행위에 관하여

가. 원고 회사는 2022년 4월부터 청구의 (유) D 이 시공하는 작업현장에 유류공급을 하였습니다. 청구의 회사는 유류대금을 체납하여 2022. 8. 월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가단118786호로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해 11.월경 확정되었습니다.

나. 하지만 청구의 회사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재산이 전무하였습니다. 원고 회사는 할 수 없이 추심전문업체 E에 채권회수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다. 다행히 E에서 청구의 회사가 청구의 F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카단10028호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면서 담보금 22,000,000원이 위 법원 2022년 금제73호로 공탁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 회사는 2023. 11. 14.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해 위 법원 2023타재18468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문 첨부)

라. 이후 청구의 회사가 제기한 목포지원 2022가단50374 손해배상 사건이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어 원고 회사는 추심권자로서 목포지원 2023 카단77호 대위에 의한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을 하여 위 결정은 2024. 2. 2. 확정되었습니다.(담보취소결정문 첨부)

마. 원고 회사는 위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해 목포지원에 확인한바, 청구의 회사와 피고 간에 채권양도양수계약에 의해 2023. 1. 9. 위 공탁금회수 청구권이 피고에게 양도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채권양도통지서 및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첨부)

바. 이트 인해 청구의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책임재산을 고의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에게 채무도 전혀 변제하지 않으므로 인해 원고 회사는 결국 강제집행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4. 청구의 회사의 무자력

가. 원고 회사는 청구의 회사가 (원 F) 을 상대로 제기한 목포지원 2022가단50374 손해배상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 채권회수를 기대하였으나, 화해권고결정은 '본소와 반소는 포기한다.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확정되어 이마저도 회수할 재권이 전혀 없게 된 상태입니다. (화해권고결정문 첨부)

나. 청구의 회사의 본점소재지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제3자(소유자 유한회사 (원 G))의 소유로 되어 있으며, 그 외 청구의 회사의 재산을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첨부)

다. 원고 회사가 파악한 청구의 회사의 유일한 재산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년금73호 공탁금회수청구권 외에는 달리 재산이 없습니다. (금전공탁서 첨부)

5. 피고 및 청구의 회사의 사해의사

가. 청구의 회사는 피고에게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양도하게 되면 원고 회

사의 채권을 확보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 이처럼 청구의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채권양도양수 계약에 의해 처분한 행위는 원고 회사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며 피고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 위에서 보듯이 결국 청구의 회사는 원고 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피고에게 처분한 것이고, 피고는 청구의 회사의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공모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을 통하여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취득한 악의의 수익자인 것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6. 결론

따라서 피고와 소외 회사 간에 행한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은 원고 회사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보전을 해하는 악의의 법률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피고는 대한민국에 위 채권에 관하여 2023. 1. 9.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는 부득이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끝.

